

2022 - 4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329호(2012.11.29.)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18호(2015.10.15.)로 추진계획 변경 승인된 양남시장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2021년 제3차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2021.12.23.) 심의를 거쳐 추진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

1.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

가.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 양남시장정비구역(변경없음)

나.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변경없음)

구 분	구역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양남시장정비구역	영등포구 양평동1가 30번지	1,956.7	

다.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성명	양남시장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국진)	① 양남시장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국진) ②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현동)	공동시행
주소	영등포구 선유로 24길4, 2층	① 영등포구 선유로 24길4, 2층 ②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라.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일 : 변경 승인 고시일

마.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개요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956.7	-	1,956.7	100.0	
정비기반시설 등	-	-	-	-	0.0	
획지	획지1	1,956.7	-	1,956.7	100.0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956.7	-	1,956.7	100.0	
준공업지역	1,956.7	-	1,956.7	100.0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03	22	국지도로	1890	당산동2가 21	양평동4가 27-2	일반 도로 (구도)			
기정	소로	2	529	8	국지도로	680	양평동1가 251	당산동2가 48-19				
기정	소로	2	-	6	국지도로	-	-	-				
기정	소로	2	-	6	국지도로	-	-	-				

라) 건축물의 주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	연면적 (㎡)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68.448% 이하	391.283% 이하	12층 이하 (42m 이하)	13,388.52㎡ (매장면적:3,024.33㎡)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 공동주택 공급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공동주택 공급계획	분양(조합원, 일반) 78세대	분양(조합원, 일반) 30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48세대	

※ 분양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세대수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2) 입점상인 보호대책 (변경없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의한 입점상인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바.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사유

- 양남시장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통시장법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동사업 시행 참여에 따른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으로 사업추진계획 변경

2. 관계서류 열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46)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02-2620-3428)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 사업추진계획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관계 도면

○ 시장정비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